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수산직불제팀·스마트해운물류팀 및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7급 2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4명(7급 4명) 중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동해안 국가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하여 증원한 정원 1명(7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8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7급 3명)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명)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해양안전심판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1명)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0명(5급 10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1명(6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어업관리단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22명(5급 3명, 7급 11명, 8급 8명),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40명(5급 6명, 6급 7명, 7급 18명, 8급 9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7항 단서 중 “4명(7급 4명)”을 “3명(7급 3명)”으로 한다.

제42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의3과 같다.

별표 1의 평택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하고, 같은 표 장항지원의 관할구역란 중 “당진군”을 “당진시”로 한다.

별표 17 중 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211”을 “212”로 하며,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206”을 “205”으로 한다.

별표 21의2 중 행정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266”을 “269”로 하며, 행정서기·시설서기·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 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37”을 “334”로 한다.

별표 25 중 총계 “1,302”를 “1,301”로 하고, 일반직 계 “1,302”를 “1,301”로 하고,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437”을 “438”로 하며,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374”를 “372”로 한다.

별표 26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

다) 제2조제2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3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5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6년 9월 30일”을 각각 “2028년 9월 3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명”을 “3명”으로, “2026년 9월 30일”을 “2028년 9월 30일”로 하며, 같은 부칙 제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중 “2026년 9월 30일”을 각각 “2028년 9월 30일”로 하며, “2026년 10월 1일”을 각각 “2028년 10월 1일”로 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6년 9월 30일”을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시설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3명(행정

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3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별표 21의2의 정원 3명(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 간호서기 또는 운전서기 3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5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6의3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명)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6의3의 정원 1명(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생략)	제42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⑥ 삭제	⑦ ----- ----- ---. ----- ----- ----- ----- ----- ----- ----- 3명(7급 3명)----- ---.
⑦ 지방해양수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4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5와 같으며, 별표 25의 정원 중 <u>4명(7급 4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 ----- ---. <u>다만,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6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의3과 같다.</u>
⑧ 해양안전심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단서 신설>	⑨ ~ ⑬ (현행과 같음)
⑨ ~ ⑬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②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령 제30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

-- 2027년 9월 30일-----
--.
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364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첨단해양교통관리팀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③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② (생략)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② -----

----- 2027년 9월 30일-----.
③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49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수산직불제팀은 <u>2026년 9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④ (생략)	----- ----- ----- <u>2027년 9월 30일</u> ----- ④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스마트해운물류팀은 <u>2026년 9월 30일까지</u> 존속한다. ② (생략)	해양수산부령 제530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75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 ----- ----- ----- <u>2027년 9월 30일</u>----- ----- 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	해양수산부령 제53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

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2

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 2027
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령 제55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

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 2027
년 9월 30일-----.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5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25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해양수산부령 제65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

연구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
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1명(행정주
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통신주
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보 또
는 운전주사보 1명)은 2026년 9
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25의 정원 4명(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 방
송통신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주사보 · 운
전주사보 · 방호주사보 · 방재안
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4명)
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
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
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
되는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
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

----- 2028년 9월 30일-
-----.

② -----

----- 2028년 9
월 30일-----.

③ -----
----- 3명-----

----- 3명)
은 2028년 9월 30일-----
--.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

수산연구관 10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7의 정원 10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시설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방송통신주사·환경주사·방재안전주사·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10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전산주사 또는 공업주사 1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방호주사보 또는 공업주사보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20의 2명(행정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 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주

----- 2028년 9월 30일----- 2028년 10월 1일 -----

-----.

② -----

2028년 9월 30일-----
2028년 10월 1일 -----

-----.

③ -----

사보·전산주사보·운전주사보
·위생주사보·조리주사보 또는
방호주사보 1명)은 2026년 9
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0의 정원 2명
(행정주사·해양수산주사·공
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전
산주사 1명, 행정서기·해양수
산서기·방송통신서기·운전서
기·위생서기·조리서기 또는
방호서기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
향 조정되는 별표 21의2의 정원
22명(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3명, 행정
주사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
보·해양수산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전산주사보·위생주사
보·조리주사보·간호주사보
또는 운전주사보 11명, 행정서
기·시설서기·공업서기·해양
수산서기·방송통신서기·위생
서기·조리서기·간호서기 또
는 운전서기 8명)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10

[illegible]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17의 정원 1 명(행정주사보·해양수산주사 보·시설주사보·공업주사보· 전산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환경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 운전주사보 또는 해양수산연구 사 1명)은 <u>2026년 9월 30일</u>까지 존속한다.	해양수산부령 제682호 해양수산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 ----- ----- ----- ----- ----- ----- <u>2028년 9월 30일</u>----- -----.
--	---

[별표 26의3]

해양안전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8항 단서 관련)

총 계	76
일반직 계	76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9
과학기술서기관	3
임기제 과학기술서기관(심판관)	8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12
행정주사 또는 해양수산주사	16
행정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운전 주사보	11
행정서기 또는 운전서기	6
행정서기보 또는 운전서기보	8

신 · 구 정원 대비 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해양수산부 공무원 정원표(제4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 사무관 · 방재안전사무관 · 식품 위생사무관 · 수의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연구관	• • <u>211</u>	• • <u>212</u>	+1
• 행정주사 · 해양수산주사 · 시설 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방 송통신주사 · 환경주사 · 방재안 전주사 · 운전주사 또는 해양수산연구사	• <u>206</u>	• <u>205</u>	-1
• •	• •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1의2]

어업관리단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주사보 · 시설주사보 · 공업 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방송 통신주사보 · 전산주사보 · 위생 주사보 · 조리주사보 · 간호주사 보 또는 운전주사보	• • <u>266</u>	• • <u>269</u>	+3
행정서기 · 시설서기 · 공업서기 · 해양수산서기 · 방송통신서기 · 위생서기 · 조리서기 · 간호서 기 또는 운전서기	• <u>337</u>	• <u>334</u>	-3
• •	• •	• •	

신 · 구정원대비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5]

지방해양수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7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302</u>	<u>1,301</u>	-1	
일반직	계			<u>1,302</u>	<u>1,301</u>	-1	
		·		·	·		
		·		·	·		
행정주사 · 시설주사 · 공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 전산주사 · 환 경주사 · 해양수산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u>437</u>	<u>438</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시설 주사보 · 방송통신주사보 · 해양 수산주사보 · 전산주사보 · 환경 주사보 · 운전주사보 · 방호주사 보 ·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학예연구사				<u>374</u>	<u>372</u>	-2	
		·		·	·		
		·		·	·		